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1차) 공고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신청서류에 의한 **심사평가 후** 예산 범위 내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결과 발표 후 공사(제작)를 시행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 및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일체의 외주 대행사를 따로 선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배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니, 일부 확인되지 않은 업체의 홍보내용으로 피해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위법·부당한 방법 예시** :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부실시공,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관련 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과제 시행, 유사과제 중복지원 등
- ◆ 시공(제작)업체는 **인천시 소재 업체로 선정해야 하며, 업체당 최대 3개(신청업체)로 참여를 한정**합니다. 단, 스마트 기술구축 분야는 인천시 외 다른 지역 시공(제작)업체도 선정 가능합니다.
- ◆ 2024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2025년 소상공인 창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2025년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2024년·2025년 옹진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본 센터, 군·구, 타 기관 유사사업과 중복수혜 불가합니다.

경영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1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천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10일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 신청자격 (※아래의 자격 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시에 등록되어 있고, 창업 1년 이상 소상공인*** (개업연월일 2024. 3. 10일까지 신청 가능, 사업장 소재지 및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임)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지원 불가

※ 소상공인 지원정책 제외 대상 업종[별표2]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 지원대상(소상공인 기준)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것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상공인 규모 기준에 해당될 것[별표1]
 - (상시근로자 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신청·접수 기간 : 2025. 3. 10. (월) ~ 3. 21. (금) 18:00까지

- 방문 접수 : 3. 19.(수) ~ 3. 21.(금) 18:00까지, 3일간(점심시간 12:00~13:00)

※ 접수처 :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6층

▣ 접수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마감 당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부탁드립니다.)
 -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사진 등 제출서류 업로드 및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센터 홈페이지(www.insupport.or.kr)>회원가입>생애주기지원>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서류 미지참 시 접수 불가)
 - 사업 공고 확인 후에 서류 작성 및 제출서류 발급하여 대표자 직접 접수(신분증 지참)
 - 대리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 대표자 본인이 직접 작성(개별신청 원칙)

▣ 제출서류(신청 시)

접수 기간(3.10~3.21) 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불가합니다!
아래 필수서류를 제출하셔야만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3.10일) 이후 발급분만 접수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 : ①~③번 서류 홈페이지에서 작성, ④~⑧번 서류 홈페이지 업로드
- 방문 접수 : ①~⑧번 서류 출력 및 작성하여 대표자 직접 제출

구분	제출서류 목록(필수)
필수	① 지원신청 체크리스트 [서식 제1호]
	② 지원신청서 [서식 제2호]
	③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안내문 [서식 제3호]
	④ 견적서 [서식 제4호] ※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시공(제작)업체는 인천시 소재 업체에 한하며, 자체 견적서 사용 가능 - 시공(제작)업체 주소, 연락처, 업체(대표자) 도장 날인 필수 - 간판 교체의 경우 시공(제작)업체 옥외광고업등록증 소지 여부 확인 - CCTV 설치의 경우 시공(제작)업체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소지 여부 확인 - 부가세 포함하여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로 선정 - 단위사업 내 세부항목을 복수 지원할 경우, 각 항목별로 견적서 제출 - 홍보 및 광고 신청업체도 견적서 필수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업체)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불가 * 발급처 : 정부24 및 위택스(온라인), 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
	⑦ 매출액 증빙서류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 - 과세사업자 : 20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 면세사업자 : 2024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발급처 : 정부24 및 홈택스(온라인),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 (대표자 포함)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가 있는 경우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발급처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 1인 사업장 또는 사업장 4대 보험이 없는 경우 : (대표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정부24(https://www.gov.kr),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해당 시	소상공인확인서(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제출 불가 시 대체 서류) ※ 「소기업(소상공인)」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유효기간 내) *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공동 대표자가 있는 경우) 통합위임장[서식 제5호]

※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매출액 증빙서류 미제출), 매출액 정량평가 접수 최하점 부여
- 공동 대표자가 있을 경우, 통합위임장[서식 제5호] 작성하여 제출

■ 지원 규모 : 155개 업체(※ 예산 한도 내, 지원 규모 변동 가능)

■ 선정 절차

- 1차 : 서류심사 (※신청자격 미충족 및 필수서류 미제출 업체는 1차 서류심사 탈락)
- 2차 : 선정 심사위원회 평가(내·외부 심사위원 구성 및 서면 평가)

■ 선정기준

- 평가항목
 - 정량평가 : 매출기준, 사업 영위 기간(업력), 2019~2023년 경영환경개선사업 수혜 여부 등
 - 정성평가 : 사업계획의 명확성, 지원내용 및 비용의 적절성, 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등
- 우대사항 (※ 우대항목별 각 5점씩 부여, 가점 최대 10점)
 - 본 센터 2025년 스마트스토어 및 디지털마케팅 교육 수료 또는 소상공인 재도약 컨설팅을 받은 업체 (교육 또는 컨설팅 중 한 가지 사항만 가점 해당)
 - 2024년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업체
 - 인천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 최종 선정발표 : 2025년 4월 중순 예정(※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결과는 개인별 문자 발송되오니, 신청서상에 대표자 핸드폰 번호 정확히 기재

2. 지원내용 및 신청 유의사항

**①점포환경개선, ②홍보 및 광고, ③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안전
3개 분야 중에서 1개 분야만 선택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단위사업명	세부지원 내용	한도액	지원업체 수
점포환경개선	<input type="checkbox"/> 옥외간판 교체	최대 250만원 이내 (공급가액 90%)	70개 업체
	<input type="checkbox"/> 제품 진열대 및 수납대 설치		
	<input type="checkbox"/> 입식 좌석 개선(일반음식점만 해당) * 좌식 테이블을 입식으로 바꾸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내·외부 인테리어 (도배, 조명, 샷시, 닥트, 바닥, 어닝, 섀팅 등)		
홍보 및 광고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홍보(블로그 체험단, 홈페이지 제작 등)	최대 250만원 이내 (공급가액 90%)	70개 업체
	<input type="checkbox"/> 오프라인 홍보(현수막, 대중교통, 신문, CI·BI제작 등)		
	<input type="checkbox"/> 홍보물 제작(리플렛, 카달로그, 판촉물 등)		
	<input type="checkbox"/> 제품 포장 용기, 쇼핑백 박스 등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안전	<input type="checkbox"/> 위생관리(매장방역, 청소용역, 살균기 설치 등)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 90%)	15개 업체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전기, 가스, CCTV 구매 및 설치 등)		
	<input type="checkbox"/> 매장 내 스마트기술 구축(키오스크, 디지털 사이니지, 무인 판매기, 스마트웨이팅 시스템 설치 등)		

■ 신청 시 유의사항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1인 1건만 신청 가능)
※ 2024년 경영환경개선사업 수혜업체 대표자 본인 명의 타 사업장 신청 불가
- 1개의 단위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단위사업 내 세부지원 내용은 중복선택 가능(※ 최대 한도액 내에서 지원)

점포환경개선	간판 교체 + 바닥 공사	→ 신청 가능
점포환경개선+홍보 및 광고	간판 교체 + 온라인 홍보	→ 신청 불가능

- 선정 결과발표 후, 사업 기간 내 완료보고서 제출 (※사업 기간 : 25년 5월~6월)
- 온라인 홍보 및 방역·청소 용역비용은 사업 기간(5~6월) 내에 수행한 것만 지원함
- 옥외광고 허가가 나지 않는 간판은 지원 불가
- 온라인 홍보는 외주 대행업체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만 지원
 ※ 네이버 광고, 카카오 비즈니스 광고, Meta 광고 등 충전방식 온라인 광고 지원 불가
- 홍보 및 광고의 경우, 업체명을 필수로 포함하여 사업 진행 후 결과물 제출
- 선정업체는 경영개선 작업 완료 후에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 보고서, 지출 증빙자료를 6/30(월)까지 센터로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 무효 처리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단위사업별 최대 한도액(250~200만원)을 무조건 지원해드리지 않습니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되오니 신중하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 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 공급가액 90%(원 단위 절사)**, 단위사업별 최대 한도액 이내 지원

※ 자기부담금 : 공급가액 10% 이상 + 부가세(VAT)

(예시) 견적서 공급가액 90%가 2,444,333원일 경우에 원 단위 절사한 2,444,330원 지급

참고 지원금액 산출 예시

공사내용	견적금액			센터 지원금액 (공급가액 90%)	자기부담금 (공급가액 10% 이상+부가세)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간판 교체	300만원	30만원	330만원	250만원	80만원
	250만원	25만원	275만원	225만원	50만원

[질문1] A업체 간판 교체 비용이 330만원(공급가 300만원, 부가세 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공급가 300만원 90%인 270만원을 지원해드리지 않고, 점포환경개선 최대 한도액 250만원이 지원됩니다. 나머지 80만원(공급가 50만원, 부가세 3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질문2] B업체 CCTV 설치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공급가 200만원 90%인 18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40만원(공급가 20만원, 부가세 2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 지원 불가 사항

- 전자·전기제품 및 기계 등 자산 취득성(처분 가능한) 물품 구매, 렌탈 비용, 중고시설, 일회성 소모품,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등은 **지원 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공기청정기, 소파, 의자, 테이블, 샴푸대,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위법 품목 등은 지원 불가
 - 지원가능 : 사업장 방역용 살균 소독기, 해충퇴치기, 손소독기, CCTV, 키오스크 등
- 최종선정 결과를 받은 이후에 공사(제작) 진행. **이전에 진행한 공사(제작)는 지원금 지급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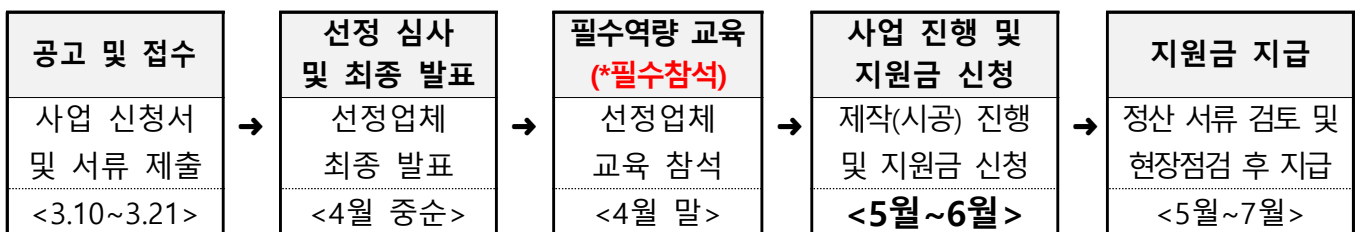
■ 신청제외 대상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본 센터 2024년 경영환경개선사업 수혜업체
- 본 센터 2024년 경영환경개선사업 수혜업체 대표자 본인 명의 타 사업장
- 본 센터 2025년 소상공인 창업 클라우드펀딩 지원사업 및 2025년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선정업체
- 전년도(2024년) 응진군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 2025년 기간 내 군·구 및 타 기관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 *2025년 응진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2025년 부평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등
- 무점포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 : 사업장이 거주 주택, 운송수단, 임대차계약 체결 없이 소속회사(또는 대리점)의 사무실 또는 영업장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등
- 단, 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홍보 및 광고 단위사업에 한해서 신청 가능(※ 타 단위사업 지원 불가)
-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종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사업자
 - (예시) ‘광고 대행, 광고물 작성 등’ 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온라인 홍보를 신청하는 경우
‘간판 및 광고물 제조, 인테리어, 실내공사 등’ 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간판 및 내·외부 인테리어를 신청하는 경우
-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024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업종, 대표자 등) 변경 및 사업장 주소 이전 예정인 업체
 - (예시)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다가 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인테리어를 신청하는 경우
부평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계양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간판을 신청하는 경우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시스템 기준)
- 소상공인 기준(①매출액, ②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① 매출액 기준 :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상공인 규모 기준[별표1]에 해당 될 것
 - ② 상시근로자 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유흥주점 등)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 제외 대상 업종[별표2]에 해당되는 경우
- 국고보조금, 장기요양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 또는 타 기관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업체 지원 불가(ex. 유치원, 어린이집, 장기요양시설 등)

3. 추진절차

■ 진행절차

-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이 총 공사비용(공급가+부가세)을 시공업체로 선입금 후에 지출 증빙서류 첨부하여 센터로 지원금 신청서 제출**



4.

선정 취소, 완료 보고 및 지원금 신청 등

▣ 지원선정 취소

- 소상공인 기준(매출액,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소상공인 지원정책 제외 대상 업종[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서를 허위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선정 결과발표 이전에 이미 공사(제작)를 완료한 경우
- 허위, 위법,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거나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변경승인 없이 시공업체 및 공사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동일사업 기간 내 군·구 및 타 기관 유사 지원사업을 중복지원 받고있는 경우
(*중복수혜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
- **사업 완료 기간(6/30일, 월요일)** 내 완료 보고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증빙서류 부실 제출, 기한 내 사업수행 미완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휴업, 사업장 양도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관련 법률 위반, 과제부실 등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작(시공)내용 변경 및 포기

- 제출한 견적서의 시공(제작)내용, 시공업체, 시공비용 등 변경 발생 시 사업변경신청서 센터로 제출
(※ 선정된 단위사업 외 다른 단위사업으로 변경 불가함)
- 사업변경신청서【별도서식】 제출 후, 센터 변경 승인 후에 시공(제작) 작업을 진행해야 함
- 신청내용 변경 시 견적금액이 상향되어도 선정 시 결정된 지원금은 상향되지 않음
- 신청내용 변경 시 견적금액이 하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90%로 감액 조정하여 지급
- 사업 포기의 경우 포기신청서【별도서식】 센터로 제출해야 함. 포기신청서 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 되는 경우 직권 취소 처리함

▣ 완료 보고 및 지원금 신청

- 시공(제작)비용은 대표자 본인 명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현금 지급, 카드결제 불가)**
- 지출 증빙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 (은행발급용) 송금확인증, 온라인 이체확인증 제출해야 함.
- 시공(제작)비용 입금 시 대표자 본인 통장에서 시공업체 대표자 통장 계좌로 입금해야 함.
(※가족 관계 포함 제3자 거래 불인정)
- 지원금은 최초 선정 시 결정된 금액 내에서 대표자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정당한 사유 없이 ①제출기한 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소요 비용을 계좌이체로 입금하지 않는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 결정 취소
- 간판을 교체한 경우 지원금 신청 시 **시공업체 옥외광고업등록증 필수 제출**
- CCTV를 설치한 경우 지원금 신청 시 **시공업체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제출**(단, 연면적 1,000㎡이하 면제)
- 지원금 신청서 검토 후 정당한 시공 완료 건에 대해서만 지급함. 센터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시공(제작)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신청업체(소상공인)가 직접 자체 시공(제작)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시공(제작)업체는 인천시 소재 업체로 선정하여 견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단 스마트기술 구축 분야는 인천 외 다른 지역 시공업체도 선정 가능함)
- 시공업체 선정 시 시공(제작)내용과 관련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를 선정해야 함
- 시공업체는 간판 교체 시 옥외광고업등록증, CCTV 설치 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소지 여부 확인
- 신청업체는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업체당 시공 참여는 **최대 3개사 참여 가능함**(시공 참여 개수 초과할 경우 선정업체는 타 시공업체로 변경)
- 시공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 대표자 본인이 금융거래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야 함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 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④ 인천광역시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위법 및 부당한 방법 예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 서류 위변조, 선정통지일 이전 사업 시행, 당 기관 및 타 기관 유사 지원사업 과제 중복지원, 부가가치세법 위반 등

▣ 기타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접수 현황, 선정기준표, 업체별 평가점수, 평가순위, 평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서류의 기재 착오, 연락 불능,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청할 경우, 보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완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원 포기 및 선정 취소에 해당하는 업체 발생 시, 예산 한도 및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차순위 예비업체를 추가 선정합니다.
-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은 일체 허위 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추진 일정 및 기타사항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생애주기지원팀(☎032-715-4047)

별표 1

소상공인 기준(상시 근로자수,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①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근로자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②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상시근로자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10명 미만
2. 음료 제조업	C11		10명 미만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0명 미만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10명 미만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0명 미만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0명 미만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10명 미만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명 미만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명 미만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0명 미만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0명 미만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0명 미만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0명 미만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0명 미만
15. 가구 제조업	C32		10명 미만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5명 미만
17. 수도업	E36		5명 미만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5명 미만
19. 광업	B		10명 미만
20. 담배 제조업	C12		10명 미만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0명 미만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0명 미만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0명 미만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10명 미만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0명 미만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10명 미만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10명 미만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10명 미만
29. 건설업	F		10명 미만
30. 운수 및 창고업	H		10명 미만
31. 금융 및 보험업	K	5명 미만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5명 미만
33. 정보통신업	J		5명 미만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5명 미만
35. 부동산업	L		5명 미만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5명 미만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5명 미만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5명 미만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10명 미만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5명 미만
41. 교육 서비스업	P		5명 미만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5명 미만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5명 미만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별표 2

소상공인 지원정책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표준산업분류	업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